제2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촉매제(요소수)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재정경제부)	1.고시 적용시한 연장(강화) ㅇ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금지 – 폭리 목적의 대상물품 과다 보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행위 금지 ㅇ 매점매석 판단기준 – (기존사업자) '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– (‘25년 신규사업자)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– (‘26년 신규사업자, 영세사업자) 수입·제조·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	규제심사 완료
2	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(관세청)	1.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·관리 및 인증번호의 검증·재검증(신설) ㅇ 협력인정업체의 등록을 위한 세부 요건 규정 및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반기별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ㅇ 인증번호의 검증 및 재검증 –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2단계 검증 체계 도입	본심사 상정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· (주문단계)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검증 및 일회용 인증 번호입력 · (통관단계) 주문단계 검증 오류를 대비해 통관단계 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 체계 마련	
3	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이전 금지의 예외조건 · 절차 등(신설) ○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금지 예외 사유 및 소유권 이전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규정 2.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· 지정취소요건 등(신설) ○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신청시 필요 서류 규정 ○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* 규정 * ▲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▲ 지정 기준에 적합 하지 않게 된 경우 등 ○ 지정취소 시 보유·관리 정보 일체를 과기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이전하도록 의무 부과 3.연구개발 참여제한사유 및 제재부가금 사유(신설) ○ 민감과제 및 보안과제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* 강화 * (예시) 보안과제 성과 국내 누설·유출 시 : (기존) 참여 제한 2년 → (변경) 참여 제한 5년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· 신고 ·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허가 등 신청 시 사용적합성 관련 자료 제출 의무(강화) ○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사용적합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및 첨부 자료 요건 규정	규제심사 완료
5	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수질오염 방지·제거 조치 의무 (신설) ○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* * ▲ 오염물질 유출·누출 방지, ▲ 유출·누출된 오염물질 확산 방지 등 2.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정비(신설) ○ 여과형 시설 설치기준* 추가 * ▲ 여과재 세척 방법 및 교체 주기 결정, ▲ 여과재 세척이 가능한 구조 설계 등 ○ 여과형 시설 관리·운영기준* 추가 * ▲ 강우 종료 후 여과재 세척, ▲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여과조 내 침전물 제거 등	규제심사 완료
6	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(신설) ○ 입장권 등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입장권 판매자(현장·비현장)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사항 규정 – (현장 판매자)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장시 본인확인 조치	본심사 상정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(비현장 판매자) 거래시 본인확인, 부정 구매·판매시 유통 제한 조치 및 처벌 가능성 사전 고지 등 – (통신판매중개업자) 거래시 본인확인, 신고기관·수사기관이 부정 판매 관련 정보삭제 요청 시 삭제·접속차단 조치 등 2.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(신설) ○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 범위* 구체화 * ▲ 매크로 판매·대여 관련 정보(접속 일시, 결제 정보 등) ▲ 부정 판매 청약 관련 정보(IP 정보, 접속 기기 정보 등)	
7	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(신설) ○ 입장권 등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입장권 판매자(현장·비현장)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사항 규정 – (현장 판매자)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장 시 본인확인 조치 – (비현장 판매자) 거래시 본인확인, 부정 구매·판매시 유통 제한 조치 및 처벌 가능성 사전 고지 등 – (통신판매중개업자) 거래시 본인확인, 신고기관·수사기관이 부정 판매 관련 정보삭제 요청 시 삭제·접속차단 조치 등	본심사 상정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(신설) ○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 범위* 구체화 * ▲ 매크로 판매·대여 관련 정보(접속 일시, 결제 정보 등) ▲ 부정 판매 청약 관련 정보(IP 정보, 접속 기기 정보 등)	